

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35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4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2019. 12. 31. 字로 개정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조례에 반영
- 변경된 복무규정(대통령령)과 자치법규 간 저촉사항을 정비하여, 직원들의 법규적용의 혼란을 방지
- 지방공무원 복무규정(대통령령)에 명시된 사항과 자치법규의 중복 기재 방지를 위해 저촉되는 자치법규 사항을 삭제

□ 주요내용

- 연가일수 7일 초과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 조항 삭제(안 제14조 제2항)
- 여성보건 · 임신휴가 분리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(안 제18조 제4항)
-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지침 안 변경에 따른 별칙 삭제(별표3. 비고2)
- 기타 쉬운 용어로 문구수정 · 정비(안 제13조의2)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1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붙임4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
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 : 2020. 2. 12. ~ 2020. 3. 3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5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불임 1 >

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 중 “별표 4와 같이 한다”를 “별표 4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8조제4항을 삭제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총무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총무과장 이 범 열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총무팀장 정 진 권
	담당자 성명전화	원치웅 (행정 2112)

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8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혼	본인	5
	자녀	1
출산	배우자	10
유산 · 사산	배우자	3
입양	본인	20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
※ 비고

- 1)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외의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< 불임 2 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의2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) 「지방공무원 복 무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 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 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 은 <u>별표 4와 같이 한다.</u></p>	<p>제13조의2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별표 4에 따른다.</u></p>
<p>제14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(생 략) <u>②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가 7일 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 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. 다만, 제 21조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	<p>제14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 <u>〈삭 제〉</u></p>
<p>③ ~ ⑥ (생 략)</p>	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특별휴가) ① ~ ③ (생 략) <u>④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 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u></p>	<p>제18조(특별휴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〈삭 제〉</u></p>
<p>⑤ ~ ⑯ (생 략)</p>	<p>⑤ ~ ⑯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3] 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8조제1항 관련)		[별표 3] 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8조제1항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대 상</th> <th>일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결혼</td> <td>본인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자녀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출산</td> <td>배우자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>유산·사산</td> <td>배우자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입양</td> <td>본인</td> <td>2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사망</td> <td>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td> <td>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 분	대 상	일수	결혼	본인	5		자녀	1	출산	배우자	10	유산·사산	배우자	3	입양	본인	20	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구 분	대 상	일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결혼	본인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녀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산	배우자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산·사산	배우자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입양	본인	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비고	※ 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1)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외의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</p> <p>2) 본인 결혼 및 배우자의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할 수 있다.(단,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)</p>	<p>1)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외의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